

제목: <정의론 제17절 평등에로의 경향?>

교안 작성자 : 이한

1 정의의 두 원칙은 평등주의적 정의관을 표현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해 보겠다. 이 설명의 실익은, “공정한 기회의 원칙이란 결국 냉담한 업적주의 사회로 나가자는 것 아니냐”는 반론에 응답하는 것에도 있다.

2 평등주의적 정의관인 이유

① 차등의 원칙은 보상의 원칙에 의해 선정되는 고려사항들에 중점을 둔다. 무엇을 보상하느냐? 바로 출생이나 천부적 재능과 같이 도덕적으로 임의적인 이유에 의해 불평등하게 분배되는 자원에 따라 결과하는 불평등은 부당하며, 따라서 이러한 열악한 출발점은 어떤 식으로든 보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보상의 원칙이란 “사회는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취급하기 위하여 보다 불리한 자질을 가지고 보다 불리한 사회적 지위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ex) 저학년 동안만이라도 지능이 높은 사람보다는 낮은 사람의 교육에 더 많은 재원이 소비되도록. 장애아동의 특수교육에 국가재원을 투입하는 것도 마찬가지.

3 **주의:** 보상의 원칙은 정의의 유일한 기준도 아니고 사회질서의 유일한 목표도 될 수 없다. 보상의 원칙은 다른 원칙들과 비교해서 경중이 가려져야 할 조건부 원칙이다. 예를 들어 생활의 평균수준을 향상하는 원칙이나 공동선을 증진하는 원칙과 비교하여 그 비중을 가리게 된다. 예를 들어 보상의 원칙만 따진다면 노인과 장애인, 병든 사람, 어린이는 굶어 죽어야 된다. 그러나 보상의 원칙이 고려되어야 할 요소임은 분명하다. 보상의 원칙을 고려하지 않으면 사람들의 선택을 평등하게 배려하지 않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시민교육센터 <청소년을 위한 민주주의 강의>, <자유주의적 평등>, <민주주의는 여기서 가능한가>강의 참조) 그런데 차등의 원칙은 보상의 원칙만을 온전하게 지킨 것이 아니다. 그것은 출발점을 같게 해서 기회 평등을 보장하자 그런 원칙이 아니다. 그러나 보상의 원칙과 일부 일치하는 점도 있게 된다. 예를 들어 공부 잘하는 사람은 비용이 많이 드는 전문적인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은, 보상의 원칙에 의해서도 지지되지만, 차등의 원칙에서도 재능있자자의 교육에 재원을 할당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볼 때 최소 수혜자의 기대치를 향상시키게 된다. 예를 들어 의학대학원에서 의사가 될 학생을 뽑는데, 머리가 나쁘고 공부를 못하는 사람을 뽑게 되면 이는 최소 수혜자에게도 해가 될 것이다. 위급한 상황 등이 발생하거나 깜빡 빠뜨리고 진료를 하여 엉터리 치료를 하게 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는 보상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이 추천하는 것이 같게 된다. 그러나 언제나 일치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소수가 독점해야 할 기술적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자격이나 기회를 소수가 독점하게 된다면 이는 보상의 원칙에는 훌륭하게 부합하지만 차등의 원칙에는 위배되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서열화된 학력이다. 학력이 학별로 서열화된 것이 노동시장에 도움이 되고 그것이 생산성을 높이고, 그 혜택이 최소수혜자에게 돌아간다는 증거가 없다. 오히려 학벌이라는 지대수익권을 소수에게만 부여하고, 그 혜택은 소수에게 계속 지속된다. 특히 이렇게 교육 자원을 배분할 때 경제적 효율성이나 사회 복지만 평가할 것은 아니다. 기본적 선에는 자존감과 자기 인생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자원이 포함된다. 교육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 사회의 문화를 향유하도록 해주며 그 과업에 충분한 능력을 발휘하여

참여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가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교육기회는 단순히 “당신에게까지 교육기회가 돌아가면 사회 전체 부가 낮아지거든”하는 말로 박탈하거나 제한할 수는 없다.

4 차등의 원칙은 보상의 원칙과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보상의 원칙이 표명하는 취지를 어느 정도 실현해주고 있다. 차등의 원칙은 사회에 의해 육성된 천부적 재능의 분배를 공동의 자산으로 생각하고 그 결과에 상관없이 이러한 분배가 주는 이익을 함께 나누어 가지는데 합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결과가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은, 유전자 자체이건, 아니면 그 유전자가 잘 발현하도록 비용을 감당하는 등으로 도와줄 수 있었던 교육환경이든, 그러한 것들은 도덕적으로 임의적인 사태이기 때문이다.

56 따라서, 천부적 재능이 불평등하게 분배되거나 사회적 여건 자체가 우연성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부정의하기 때문에 제도상의 서열화는 언제나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은 그른 것이다. 유전자가 무엇을 타고 나느냐 나지 않느냐, 좋은 부모를 만나느냐 만나지 않느냐는 태풍이 오느냐 오지 않느냐랑 마찬가지로 다. 그것 자체는 정의와 부정의 여부를 가릴 수 없는 ‘사태’일 뿐이다. 자연적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는 우연성 자체가 부정의라고 헤버리면 부정의는 마치 “인간은 모두 죽는다”처럼 “사회는 모두 부정의하다”식으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숙명이 되어버린다. 정의, 부정의는 여러가지 사태에 대응하여 사회를 조직하는 방식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다. 태풍을 두고 부정의하다고 할 수는 없다. 태풍이라는 도덕과 무관한, 도덕적으로 임의적인 사태에 의해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이 그대로 손해를 감수하게 하는 것이 부정의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천부적 재능과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느냐는 문제는 자연적 사실에 불과하며, 정의 여부가 문제되는 것은 제도가 그러한 사실들을 처리하는 방식이다.

우연성이 존재한다고 하여 사람들이 이러한 우연성에 자신을 내맡길 필연성(no necessity - 번역수정 p153. 밑에서 세번째 줄)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연성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요, 그것을 그대로 투과시켜 사회적 결과로 내느냐는 다른 하나로, 별개의 문제다.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공동의 이익을 가져오는 경우에만 자연적·사회적 여건의 우연성에 의한 불평등을 허용한다. 그래서 불평등은 숙명에 체념한 결과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합의한 결과가 되는 것이며, 주먹구구 공리주의에 의해 강압된 결과가 아니라 만장일치적으로 동의한 결과가 되는 것이다.

6 ②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평등주의적 정의관임을 보여주는 또 한 가지 점은 차등의 원칙이 호혜성 reciprocity 의 입장을 표현한다는 사실이다. 호혜성이란 바로 상호 이익의 원칙이다. 그런데 얼핏 생각하기에 차등의 원칙은 최소수혜자한테만 유리하고 그보다 형편이 나은 사람들한테는 이익이 되지 않아서 호혜성에 위배되는 것처럼 보인다. 예를 들어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다. 상호 이익 원칙을 제대로 적용하려면 최소수혜자의 기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못사는 사람과 잘 사는 사람 간에 가중치가 부여된 평균치의 극대화를 추구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그러나 도덕적으로 임의적인, 자연적 사회적 우연성 때문에 이미 더 유리한 사람들의 이익을 더 높이 평가하도록 가중치를 또 부여한다면, 이는 이미 유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두 번씩이나 유리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비판은 뭔가 맞지 않는 것 같다. 유리함을 ‘더’ 높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확률계산을 하는 방식일

뿐이기 때문에 최소수혜자나 형편이 나은 사람이나 한번씩만 확률계산에서 고려되었을 뿐이다. 결국 제대로 된 비판은 호혜성의 원칙은 그 호혜성이 적용되는 조건이 이미 불공정한 상태에서는 잘 작동되지 않는다고 지적함이 옳다. 예를 들어 토지를 모두 소유한 지주와, 그 지주에게 땅을 빌려서 소작료를 납입하는 소작농 사이에, 어떤 사회체제가 상호이익이 되느냐라고 물으면 말이 안된다. 정의로운 사회로 가는 어떠한 개혁도 현재 부정의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지주에게는 불리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문단의 논증구조는 다음과 같이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 “호혜성의 원칙이라는 것은 그 원칙의 적용 바탕이 되는 구조가 정의롭게 짜여져 있을 때에 적용가능하다. 그런데 그 구조의 정의로운 설정은 도덕적으로 임의적인 사태에 의해 주어진 기득권을 보호하지 않는 것이어야만 한다. 그렇지 아니하고는 결국 우연에 의해서 좀 더 나은 교섭력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그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는 형국 밖에 되지 않고, 그 상태에서 적용되는 호혜성은 껍질 뿐인 호혜성이 되기 때문이다”)

7 더 유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응분의 몫은 권리를 의미하는데, 그 권리 자체는 현행 협동 체제의 존재를 전제한다. 그래서 협동 체제의 틀을 따지는데 체제의 결론인 권리부터 들고 나와서는 안된다. 예를 들어 경쟁시장에서 희소한 기술이나 재능을 보유한 사람이 그 경쟁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만큼을 모두 가져갈 수 있는 권리 같은 것은 자연권으로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도 혼자서는 아무것도 생산해낼 수 없다. 다른 사람의 협력이 필요하다. 시장이라는 것은 경제체제의 운용방식일 뿐이지, 도덕적 규범이 될 수는 없다.

8 희소한 재능 역시 훌륭한 가정이나 사회적 여건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말콤 글래드웰의 『아웃라이어』 참조) 근면성실 또한 유전자의 영향과 가정환경의 영향이 크다. 그렇다고 해서 재능있는 자를 노예화하자는 것은 아니다. 공리주의에서는 재능있는 자의 노예화가 발생할 수 있다. 재능있는 자가 재능을 써고 일을 안하면 사회 전체의 공리가 줄어들므로 노예로 만들어서 계속 일을 시키는 것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공정으로서의 정의에서는 자신의 삶의 기획은 전적으로 자신에게 달려 있고, 사회의 배경적 구조는 자신의 처지를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경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줄 뿐이다. 컴퓨터에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시를 쓰고 싶다면 그만이다. 이는 제1원칙인 자유의 원칙이 우선성을 갖기 때문이다. 따라서 차등의 원칙에 따른 사회의 배경적 구조가 유리한 처지의 사람들과 불리한 처지의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수락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다 재능있는 사람들의 한계 기여도는 플러스가 되도록 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하거나 더 재능이 있는 경우 항상 더 나아지므로 나쁠 것이 없다. 노예화는 결코 안된다.

9 차등의 원칙은 또 다른 평등주의 이념, 박애의 원칙에 대한 중요한 해석을 제공한다. 박애는 복종과 굴종의 방식이 없는 가운데서 명백한 사회적 존경심을 어느 정도 동등하게 갖는 것을 뜻한다. 물론 박애는 이러한 것들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시민적 우애와 사회적 연대감도 뜻하지만 그렇게 이해될 때는 어떤 확정적인 요구를 표현하지 않는다.(번역수정: p157 10째줄을 앞 문장과 같이 수정) 차등의 원칙은 박애의 자연스러운 의미, 즉 보다 못한 처지에 있는 타인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한 보다 큰 이익을 가질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확정적인 요구조건을 표현하게 된다. 박애의 원칙이 적용되는 가장 전형적인 경우는 가

족이다. 가족에게 이익 총량 극대화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가족 중 만형만 혼자서 잘 살고 나머지는 손가락 쫄쫄 빨고 있는 상황은 가족 간의 박애가 실현되는 상황이 아니다. 추석 때 모여서 술한잔 들어가면 막내가 만형 떡살 잡을 수도 있다.

10 차등의 원칙이 박애를 실현하는 것으로 이해되면, 박애라는 것은 인간의 본성상 실현불가능한 이타적 감성을 항상적으로 가질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차등의 원칙을 실현하는 제도에 합당하게 동의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것이라는 요구만을 하게 될 뿐이어서 실현가능한 이상을 표현하게 된다.

이제 자유, 평등, 박애는 각각 롤즈의 정의의 원칙에 연결될 수 있게 된다. ① 자유는 양립가능한 최대한의 자유를 보장하는 제1원칙에, ② 평등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라는 제1원칙에도 상응하고, 공정한 기회 균등이라는 제2원칙의 뒷부분에 상응한다. ③ 마지막으로 박애는 차등의 원칙에 상응한다.

11 정의의 원칙이 전통적인 관념의 평등과 박애라는 이상에 부합한다는 점이 드러났다. 이 점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정의의 두 원칙에 대한 민주주의적 해석은 업적주의 사회와는 다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국사회의 학교에서는 평등이란 재능 있으면 누구나 출세할 수 있다는 형식적인 기회 균등의 관념으로 가르치고 있다. 그러면서 상위 계층이나 하위 계층간에 생활 수단이나 권리나 조직 속의 특권에 있어 뚜렷한 격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런 식의 형식적 기회 균등은, 효용을 부로 치환시켜버린 타락한 공리주의적 관념이 암암리에 전제되어 있다. 실질적으로 사회적 자연적 우연을 보상하여 기회를 제공하여 주게 되면 전체 총 부가 극대화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식의 원리에 기초한 사회 운용을 하게 되면 빈곤한 계층의 문화는 보다 핍진적으로 되는 반면에 지배층이나 기술 지배적 엘리트 계층은 권력과 부라는 국가적 목적에 봉사한다고 자랑할 수 있게 된다. 한마디로 가난한 사람은 하루하루 먹고 살고 단기적 소비에만 연연하고 그 이상의 인생의 목적을 갖지 않는 반면에 엘리트는 사회에 큰 일을 한다는 품 나는 야망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0대 미숙련 계층에게 “장래에 뭘하고 싶냐?” 이렇게 물으면 “나는 이러저러한 분야를 공부하여 그 오묘한 깊이를 느끼며 자아를 실현하고 싶다”라는 답은 절대 나오지 않는다. “어디서 돈이 푹 떨어져서 장사나 했으면 좋겠다. 옷 장사나 음식 장사, 맥주집 장사 등등”이라는 답이 태반이다. 백화점 가서 서비스 노동을 하는 여성 노동자에게 물어도 그렇고, 생산직에 일하다가 군대 와서 제대를 앞둔 후임병에게 물어도 같은 답이 나온다. 뭘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을 못하게 된다. 이게 바로 롤즈가 생활양식이 점점 더 핍진적으로 된다는 뜻이다. 이런 식으로 되면 지배계층은 이렇게 말한다. “역시 우리만이 사회의 큰 향방을 고민하고 영향을 미칠 자질이 있는거야. 그러니까 생각도 빈곤한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몰아주지 말고 우리에게 자원을 몰아달라”. 이렇게 되니 기회균등이란 영향력이나 사회적 지위를 추구함에 있어 보다 불운한 사람들을 뒤에 처진 대로 내버려두는 식의 속 빈 강정 같은 균등만을 의미할 뿐이다. 그래서 업적주의 사회는 정의의 원칙에 대한 다른 해석에 대해서는 위험물이 된다. 즉, 이론을 짜서 뭘 정교하게 구축해보려고 해도 결국 업적주의 사회의 정당화로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공리주의가 대표적이다. 공리주의가 정의의 원칙의 한 해석의 흐름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극대화하려면 결국 이를 잘 담당할 수 있는 계층에게 놀 수 있는 물을 제공하라는 식의 잘하는 놈 몰아주자는 정책에 반대할 근거가 매우 빈약해진다. 나쁜 반대 논리를 제공할 수 있겠지만 끝

임없이 미끄러져 돌아가버린다. 그렇지만 민주주의적 입장, 즉 롤즈의 입장에서는 그런 개미지옥 형의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차등의 원칙은 사회의 목표를 근본적인 점에서 변형시키기 때문이다. 더 이상 사회 총 부의 극대화나 공리의 극대화가 사회 운영의 목표가 아니다. 21세기 선진한국이라고 말했을 때, 선진한국이라는 것이 국민소득 몇만달러 달성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치환되어 버리는 정치적 구호는 더 이상 성립이 불가능하게 된다. 차등의 원칙에서는 최소 수혜자들이 도대체 그 국민소득 몇만달러 사회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느냐를 따지기 때문이다. 일본도 자신들이 선진국가라는 착각을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선진국 아니었다. 자민당이 해쳐먹으면서 양극화 심화시키기만 했다. 이런 것은 차등의 원칙을 고려해 보면 제대로 된 사회 운영이라고 전혀 볼 수 없다. 그런데 업적주의 관념에 사람들이 세뇌되어서 사회운영의 다른 원리를 생각해보지 않기 때문에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사회가 망쳐지면서도 겉으로 경제만 조금 살아나는 것 같으면, 주식 값만 조금 오르는 것 같으면 아 정부가 운영을 잘 하고 있구나 하고 멧도 모르고 지지하는 것이다.

정의의 두 원칙을 지지하는 민주주의적 입장이 업적주의 사회로 결코 빠지지 않는다는 점은, ① 사회의 기본 가치에 자존감이 포함되고, ② 질서정연한 사회는 사회적 결합체들의 사회적 통합체라는 사실에 주목할 경우에는 더욱 명백해진다.(79절) 부연하자면 다음과 같다.

① 최소 수혜자 역시 자신의 가치에 대한 확신감이 필요하다. 너의 문화와 생활양식은 폄진적이지만 절대적으로 떡고물 양이 많아지니까 낮은 사회적 지위와 적은 실질적 기회에 만족하라는 말은 성립되지 않는다. 사람은 본성상 사회적 지위가 그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확실히 용의 꼬리보다 뱀의 머리가 낫다.

② 사회에 위계제 hierarchy 가 존재할 수 밖에 없다 해도 그 불평등의 정도는 합당한 근거에 기초하고 있어야 한다. 업적주의 사회는 그 불평등의 정도에 대해서 합당한 근거를 갖지 않게 된다. 그냥 사회의 어떤 총 효용이라든가 총 부가 많아지는 한 어떤 불평등도 괜찮다는 식이다. 양극화는 어쩔 수 없다는 한나라당 인사들의 막간 발언은 그와 같은 철학의 빈곤을 드러내는 것이다. 원래 정의의 원칙에 합의하는 당사자들은 평등한 지위에서 그러한 합의에 이르는 것이며 처음부터 기득권을 가지고 합의하게 되면 그것은 윤리의 원칙으로서 아무런 정당성을 가지지 못한다. 평등의 선부터 출발하여 어디까지 불평등이 허용되느냐에 대한 기준을 가지게 되는데, 차등의 원칙과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은 이에 대하여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해 준다.

교육이 대표적인 예인데, 업적주의 사회는 잘 하는 놈 한테 몰아주라는 원칙을 가지게 된다. (번역수정 p159 첫번째 문단 밑에서 4째줄 : 예를 들면 교육에 대한 재원의 할당은 ‘숙련된 생산능력을 산출하는 효과에 의해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최소 수혜자를 포함한 시민들의 개인적 사회적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그 가치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 정해진 교육 예산을 투입하여 가장 생산성 높은 인간을 최대로 배출할 가능성이 높은 정책을 채택한다는 소리다. 그래서 장학금 제도는 업적주의 사회의 표본이다. 공부 잘해서 학점 잘 받으면 사회에 진출할 때 이익이다. 또 집안에 별 문제가 없으니까 공부에 전념할 수 있어서 학점도 잘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그런 학생들에게 돈까지 몰아준다. 이것은 이중 이득이다. 그렇지만 업적주의 사회는

“장학금은 학업을 장려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잘하는 놈한테 주지 그러면 못하는 놈한테 주리”하고 말한다. 이런 식의 반응이 너무나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은 다 정의관이 확립되어 있지 못해서 그렇다.

민주주의적 입장에서 보자. 이 입장이 타당하다면, 자존감이라는 중요한 기본 가치가 포함되어서, 실제 인생 기획을 실현함에 있어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가 최소수혜자에게도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여기에 리처드 파인먼과 같은 재능을 가진 사람이 있다. 그런데 굿윌헌팅에서처럼 그냥 대학 청소부로 일한다. 굿윌헌팅에서 맷 데이먼은 나름 책도 읽고 하지만 실제로는 한국에서 청소부로 뽀세게 일하면 책 읽을 시간 잘 없다. 그냥 꺾진적으로 변해가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한테 교육의 기회를 안준다. 그의 개인적 사회적 생활은 보다 높은 수준의 삶의 기획 실현과 사회에 대한 영향이라는 점에서 전혀 윤택해지지 않는다. 리처드 파인먼 보고 돈 많이 줄테니 청소부 계속 해라는 식은 민주주의적 입장에서 결코 허용될 수 없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공부할 기회라는 것이 학위를 딸 기회로 치환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모두가 다 대학가자, 대학을 의무교육으로 만들자는 식의 소리는 자유의 원칙에 어긋나게 되버릴 위험이 있다.

12 한 가지 문제를 더 언급해보자. 천부적 재질은 자연적 사실로 변경할 수 없기는 하다. 그러나 그러한 재질의 분배는 사회 체제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천부적 재질이 발현되는 것과는 다른 문제다. 발현의 문제란 “리처드 파인먼도 흑인 슬럼가에 태어났으면 물리학 못하고 뽀이나 팔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발현의 문제 이외에도 유전자 양극화의 문제다. 한국에서도 잘사는 사람, 고학력자끼리 결혼하고, 못사는 사람 저학력자끼리 결혼한다. 이래서야 유전적 동질성이 계층별로 강화될 뿐이다. 이것은 다시 가난한 사람들이 계속 꺾진적으로 되게 되는 원인이 된다. 하늘에 있는 용끼리만 짝짓기를 하니 개천에서는 도마뱀만 나오게 된다.

원초적 입장에서 볼 때, 합의를 하는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후손이 한번 빼끗해서 가난한 축에 끼었다고 해서 점점 그 유전적 질이 열악해지는 사태는 원하지 않는다. 최선의 유전적 자질이 확보되기를 바란다. 유전적 양극화가 되는 사회는 정의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그렇다고 우생학은 아니다. 제1원칙을 위배해서는 안된다. 무능한 사람 거시기를 잘라서 상처부위를 담뱃불로 지진다음 봉합하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자유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으면서도 무지의 베일에서 합의하는 대표자들의 관심사를 고려하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복지제도나 거주자금에 대한 혜택, 그리고 누구에게나 충분히 보장되는 교육재원은 가난한 사람들이 계속 꺾진적으로 살면서 자녀를 낳으면 먹여 살리기에 바쁜 상황을 탈출할 수 있게 해준다.

(교육재원이 학교를 통해서만 독점적으로 분배되면서, 사회적 우연과 자연적 우연에 의한 격차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경쟁에서 이긴 사람만이 상급의 학교로 진학하여 사회적으로 조성된 교육재원의 도움을 받아 재능을 꽃피울 수 있게 하는 학교체제는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조차 천부당만부당한 제도라 할 수 있다.)